

사건번호 : 2024 회합 100105

채무자 : 주식회사 티몬

# 조사보고서

조사위원 한영회계법인

# 조사위원의 의견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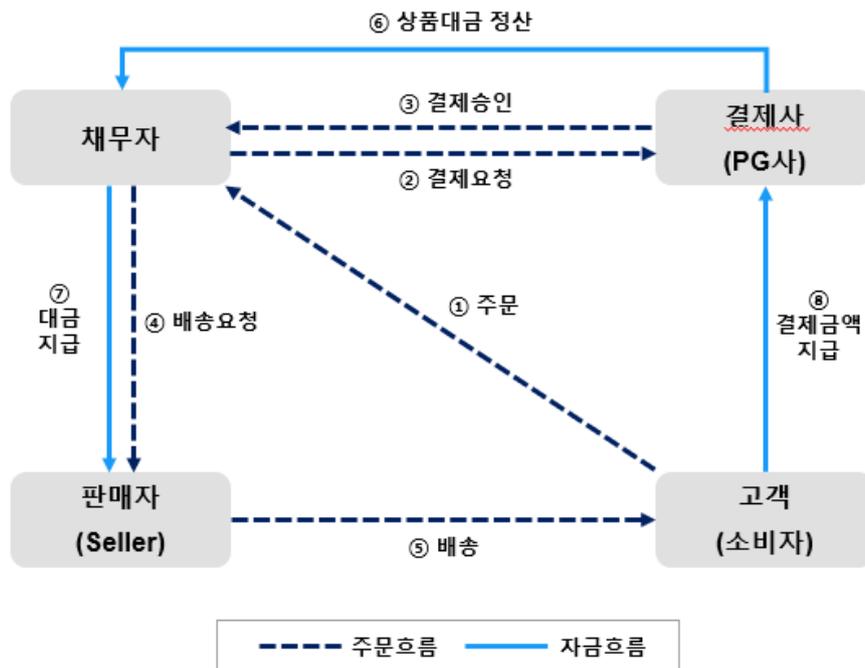
## 1. 조사의 개요

본 조사는 주식회사 티몬(이하 "채무자")의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른 원인과 재산상태, 채무자의 경제성(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 및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4년 9월 10일을 조사기준일로 하여 2024년 9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의 기간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 채무자의 개요

채무자는 2010년 3월 31일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전자제품, 자동차용품, 가전용품, 가구용품, 생활용품 등의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 다수의 사업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커머스 업체로 주된 사업은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업입니다. 오픈마켓에서 상품이 거래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채무자 회사의 중개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품(또는 용역)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구매대금을 결제하였다면, 고객 → PG사(카드사) → 채무자회사 → 판매자의 순서대로 구매대금이 결제 및 정산됩니다. 즉, 소비자의 구매대금이 채무자 회사를 통하여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주주는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Qoo10 Pte Ltd.와 주식회사 티몬글로벌이 채무자 회사의 총 발행주식 기준으로 99.93%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회사들이 보유한 기명식전환우선주는 1 주당 1 개의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24 년 7 월 29 일 회생절차 개시신청하여 2024 년 9 월 10 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3.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회사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1) 이커머스 사업에 내재된 구조적 리스크의 현실화**

이커머스 사업은 '규모의 경제'에서 창출되는 매출 규모가 도출되기까지 오랜 시간 적자를 감내하며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유치해야 사업이 유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큐텐그룹이 최대주주로 등극하기 직전이었던 2022 년 말에 누적된 결손금이 약 1 조 3 천억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큐텐그룹이 최대 주주로 등극 후, 미국, 유럽, 동남아를 한데 묶는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전략의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한 2025 년부터는 업계 1 위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결손에도 불구하고 매월 일정 수준으로 매출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상품 공급자인 판매자들에게 약속한 시기에 대금을 정산해 주어 양질의 판매자가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발맞춰 소비자들도 늘려가는 것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들에게 약속된 시기에 대금을 정산하지 못할 경우 이커머스 기업의 부실한 재무구조를 우려하는 판매자들이 대량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고객들이 약속된 시기에 배송 받지 못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기에 리스크 관리가 필수불가결 하지만 후술할 내용이 발생하며 자금경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2) 미정산 사태 발생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싱가포르 및 동남아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는 큐텐은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 소피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알리익스프레스의 동남아 진출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거래액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입지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큐텐은 한국의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인수하였고, 동남아 점유율과 유통망(큐익스프레스)을 활용해 한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커머스 생태계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거래액을 증가시키고, 판매자와의 수수

료 협상에서 우위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며, 나아가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거래액 확대를 위해 역마진 프로모션 등 비정상적인 영업 방법을 시행하면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정산액 규모가 커지고 현금 유보액이 부족해지자 상품권 거래를 늘리고 정산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증가하는 적자의 폭을 막지 못하고 결국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자들의 대규모 이탈과 고객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지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유출

채무자 회사는 큐텐그룹에 인수된 시점 이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약 1,349 억원의 자금 순유출을 발생시켰으며,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금유출 사유는 지배주주 티몬글로벌의 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대여 1,000 억과 큐텐그룹 최상위지배기업 Qoo10 Pte.Ltd.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목적에 해당합니다. 지배주주 티몬글로벌은 큐텐그룹의 중간지주 역할로 금번 미정산사태 이후 휴업상태로 확인되며, 최상위지배기업인 Qoo10 Pte. Ltd.는 2024년 11월 11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으로부터 청산명령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위메프와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며, 기타 큐텐그룹 관계사 또한 영업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유출액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유출은 채무자 회사의 유동성을 급격히 악화시켰으며, 이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채무자 회사는 상기의 원인들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4. 법인 채무자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은 ① 이커머스 사업에 내재된 구조적 리스크의 현실화 ② 미정산 사태 발생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③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유출입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유출은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의 자금 압박을 가중시켰으며, 실질적으로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야 할 정산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미정산사태를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며, 이에 채무자 회사의 지배주주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사위원이 법인 채무자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 관련하여 조사 과정 중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큐텐그룹의 채무자 회사 인수

2023년 3월, 싱가포르 소재의 Qoo10 Pte. Ltd.(이하 큐텐)는 Monster Holdings LP(이하 몬스터홀딩스)와의 주식교환 계약을 통해 티몬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큐텐은 기존 대주주였던 몬스터홀딩스에게 큐텐 지분 24.99%를 제공하는 대가로 티몬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큐텐은 취득한 티몬의 주식을 티몬글로벌에 현물출자 하였습니다. 기존 대주주였던 몬스터홀딩스와의 거래는 향후 IPO 조건이나 콜옵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큐텐이 티몬을 인수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큐텐은 2010년 싱가포르에서 이베이와 합작으로 설립되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여 영업을 수행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싱가포르 투자회사로부터 8,210만 달러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큐텐의 입지는 점점 축소되었고, 거래액과 매출액이 감소하였습니다.

큐텐의 오너 구영배 대표는 큐텐의 성장 잠재력 상실과 동남아 이커머스 업계에서의 입지 축소를 만회하기 위해 돌파구를 모색하던 중, 한국 이커머스 업계와 큐텐을 연결하여 아시아 지역을 커버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는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이하 IPC) 인수를 통해 이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만, 티메프와 IPC는 지속적인 영업 적자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기존 대주주들도 사실상 경영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큐텐이 이들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큐텐 대표 구영배는 과거 지마켓을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상장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티메프와 IPC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지마켓에서 영업 손실을 감수하며 거래 규모를 확대해 나스닥 상장을 이루어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거래규모 성장 전략을 펼쳤습니다.

티메프, IPC, 그리고 큐텐 모두 독자적으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쿠팡처럼 손실을 감수하며 거래 규모를 키우고, 이를 통해 셀러와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 규모 성장 전략에는 현실적인 한계점(손실확대)이 존재했습니다. 이커머스는 본질적으로 상품 구색과 가격 경쟁이 중요한 시장이기에, 구영배 대표의 사업 계획과 영업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이슈 등의 문제점을 지나치게 간과한 점이 현 사태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회사는 설명하고 있고, 지마켓 상장시점의 한국 이커머스 상황과 쿠팡과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이 건재한 현실적인 영업환경을 간과한 것도 문제점이었던 것으로 회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유출

채무자 회사는 큐텐그룹으로 인수된 시점 이후 특수관계자 간 빈번한 자금거래를 진행해왔습니다. 큐텐그룹 인수 시점 이후 주요한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23 년			2024 년			순유출 합계
	입금(A)	출금(B)	순유출(B-A)	입금(A)	출금(B)	순유출(B-A)	
<b>QOO10 PTE.LTD</b>	<b>6,300,000</b>	<b>23,100,000</b>	<b>16,800,000</b>	-	<b>7,800,000</b>	<b>7,800,000</b>	<b>24,600,000</b>
선급금(*1)	6,300,000	16,300,000	10,000,000	-	-	-	10,000,000
대여금(*2)	-	6,800,000	6,800,000	-	7,800,000	7,800,000	14,600,000
<b>(주)티몬글로벌</b>	-	<b>106,149,558</b>	<b>106,149,558</b>	-	<b>3,078,000</b>	<b>3,078,000</b>	<b>109,227,558</b>
대여금(*3)	-	106,149,558	106,149,558	-	3,078,000	3,078,000	109,227,558
<b>(주)티몬위드유</b>	-	<b>320,000</b>	<b>320,000</b>	-	<b>180,000</b>	<b>180,000</b>	<b>500,000</b>
대여금(*4)	-	320,000	320,000	-	180,000	180,000	500,000
<b>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b>	-	<b>2,000,000</b>	<b>2,000,000</b>	-	-	-	<b>2,000,000</b>
대여금(*4)	-	2,000,000	2,000,000	-	-	-	2,000,000
<b>(주)위메프</b>	<b>20,000,000</b>	<b>25,000,000</b>	<b>5,000,000</b>	<b>124,300,000</b>	<b>116,100,000</b>	<b>(8,200,000)</b>	<b>(3,200,000)</b>
대여금(*2)	20,000,000	25,000,000	5,000,000	96,600,000	93,600,000	(3,000,000)	2,000,000
차입금(*2)	-	-	-	27,700,000	22,500,000	(5,200,000)	(5,200,000)
<b>(주)인터파크커머스</b>	-	-	-	<b>18,200,000</b>	<b>20,000,000</b>	<b>1,800,000</b>	<b>1,800,000</b>
대여금(*2)	-	-	-	18,200,000	20,000,000	1,800,000	1,800,000
<b>합 계</b>	<b>26,300,000</b>	<b>156,569,558</b>	<b>130,269,558</b>	<b>142,500,000</b>	<b>147,158,000</b>	<b>4,658,000</b>	<b>134,927,558</b>

(\*1) 장부상 선급금 명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조사 결과 큐텐에 판매대금을 선지급 후 정산대금을 추후 상계하는 식의 거래 구조를 만들었으며, 이는 Qoo10 Pte.Ltd. 싱가포르 법인의 정산일에 맞추어 부족한 자금을 채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것으로 실질적인 관계사 대여금 유출 내역으로 판단됩니다.

(\*2) 정산일에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내역에 해당합니다.

(\*3) 지배회사 티몬글로벌의 채무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인출된 내역에 해당합니다.

(\*4) 관계사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인출된 내역에 해당합니다.

영업규모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많은 자금이 지출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영업규모는 지출도 동시에 늘어나게 하며, 미수금과 채권이 회수되는 시기와 정산금이 지출되는 기간에 불일치가 없게 면밀한 자금소요 계획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경우, 거래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역마진 프로모션(거래규모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는 영업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셀러(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규모도 커졌으나, 역마진 프로모션으로 거래액 대비 현금유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현금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는 상품권 거래증가를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0~2021 년 평균 상품권

거래액은 8,146 억원 수준이나 2022 년 1.3 조원, 2023 년에는 2.7 조원, 2024 년 7 월까지 1.8 조원 수준의 상품권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품권 거래로도 부족한 현금은 큐텐 계열사간의 자금거래로 융통하였습니다. 상기 표의 대여금 현황은 큐텐 인수 후의 채무자 회사의 대여금 내역입니다.

한편, 티몬글로벌에 대여한 1,092 억원은 정산에 사용된 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티몬글로벌은 2021 년에 채무자 회사에 3 천억 규모의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하였으나, 이 중 1 천억원은 투자자 약정사항으로 사용제한 예금으로 제한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된 내역입니다. 이후 티몬글로벌에 1 천억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기존 투자금 1 천억의 회수를 요청하였으며, 티몬글로벌은 이를 상환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에서 대여 형태로 자금을 충당하여 기존투자자에게 상환한 내역에 해당합니다.

### (3) 지배주주의 책임

법인 채무자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큐텐그룹에 인수된 시점 이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약 1,349 억원의 자금 순유출을 발생시켰으며,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금유출 사유는 지배주주 티몬글로벌의 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대여 1,000 억과 큐텐그룹 최상위지배기업 Qoo10 Pte.Ltd.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목적에 해당합니다. 지배주주 티몬글로벌은 큐텐그룹의 중간지주 역할로 금번 미정산사태 이후 휴업상태로 확인되며, 최상위지배기업인 Qoo10 Pte. Ltd.는 2024 년 11 월 11 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으로부터 청산명령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위메프와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며, 기타 큐텐그룹 관계사 또한 영업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유출액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큐텐그룹 최상위지배기업 Qoo10 Pte.Ltd 의 대표이사 구영배는 동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 류광진은 주로 구두승인을 통해 자금거래 승인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 자금대여 행위는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재산 은닉 또는 유용 등으로 인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으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유출은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의 자금 압박을 가중시켰으며, 실질적으로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야 할 정산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미정산사태를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며, 이에 채무자 회사의 지배주주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 검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지배주주 및 임원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5. 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가 제시한 조사기준일(2024년 9월 10일) 현재의 재산상태와 본 조사위원이 자산, 부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를 수정한 후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채무자제시금액	실사조정	재산상태조사액
<b>1. 유동자산</b>	<b>95,776,728</b>	<b>(66,844,838)</b>	<b>28,931,889</b>
<b>당좌자산</b>	<b>85,275,396</b>	<b>(56,477,766)</b>	<b>28,797,630</b>
현금및현금성자산	6,964,148	(68,028)	6,896,120
단기금융상품	1,353,000	-	1,353,000
매출채권	21,510,900	(18,375,004)	3,135,895
미수금	22,967,924	(13,693,223)	9,274,700
미수수익	1,088,569	(71,051)	1,017,518
단기대여금	29,539,000	(22,489,682)	7,049,318
기타당좌자산	1,851,855	(1,780,777)	71,078
<b>재고자산</b>	<b>9,810</b>	<b>(9,810)</b>	<b>-</b>
상품	9,810	(9,810)	-
<b>기타유동자산</b>	<b>10,491,522</b>	<b>(10,357,263)</b>	<b>134,259</b>
선급금	10,407,263	(10,357,263)	50,000
선급비용	84,259	-	84,259
<b>2. 비유동자산</b>	<b>14,418,860</b>	<b>26,902,526</b>	<b>41,321,386</b>
<b>투자자산</b>	<b>1,739,576</b>	<b>34,260,424</b>	<b>36,000,000</b>
장기금융상품	1,219,576	(219,576)	1,000,000
장기대여금	520,000	34,480,000	35,000,000
<b>지분법투자주식</b>	<b>75,000</b>	<b>(75,000)</b>	<b>-</b>
지분법주식	75,000	(75,000)	-
<b>유형자산</b>	<b>8,919,862</b>	<b>(5,068,496)</b>	<b>3,851,366</b>
비품	3,392,187	(128,655)	3,263,532
시설장치	587,834	-	587,834
리스자산	4,939,841	(4,939,841)	-
<b>무형자산</b>	<b>79,612</b>	<b>-</b>	<b>79,612</b>
소프트웨어	79,612	-	79,612
<b>기타비유동자산</b>	<b>3,604,811</b>	<b>(2,214,402)</b>	<b>1,390,409</b>
장기보증금	3,228,626	(2,213,126)	1,015,500
장기미수수익	376,184	(1,275)	374,909
<b>자산총계</b>	<b>110,195,587</b>	<b>(39,942,312)</b>	<b>70,253,275</b>

구분	채무자제시금액	실사조정	재산상태조사액
<b>1. 회생담보권</b>	<b>2,178,694</b>	-	<b>2,178,694</b>
상거래채권(판매자)	171,072	-	171,072
미발생구상채권	2,007,621	-	2,007,621
<b>2. 회생채권</b>	<b>865,225,510</b>	<b>143,964,482</b>	<b>1,009,189,992</b>
대여금채권	68,538,163	-	68,538,163
상거래채권(판매자)	593,188,440	2,329,158	595,517,598
상거래채권(소비자)	1,243,749	3,517	1,247,267
상거래채권(양수금)	146,072,874	-	146,072,874
상거래채권(일반)	49,717,315	-	49,717,315
구상채권(PG 사)	253,452	78,930,658	79,184,111
구상채권(일반)	150,000	-	150,000
미발생구상채권	6,061,516	1,772,282	7,833,797
특수관계인채권	-	60,928,867	60,928,867
<b>3. 조세 등 채권</b>	<b>1,016,991</b>	-	<b>1,016,991</b>
<b>4. 공익채권</b>	-	<b>6,521,250</b>	<b>6,521,250</b>
미지급급여	-	65,676	65,676
미지급퇴직금	-	1,678,152	1,678,152
대지급금	-	1,272,008	1,272,008
퇴직급여충당부채	-	3,505,414	3,505,414
<b>5. 미확정채권 현실화예상액</b>	-	<b>193,442</b>	<b>193,442</b>
소송 현실화예상액	-	193,442	193,442
<b>부채총계</b>	<b>868,421,195</b>	<b>150,679,174</b>	<b>1,019,100,368</b>
<b>자본총계</b>	<b>(758,225,607)</b>	<b>(190,621,486)</b>	<b>(948,847,093)</b>

## 6. 우발채무(보증채권)의 내역

### (1) 미발생구상채권

보증제공회사로부터 피보험자에게 대지급이 발생할 때 확정되는 구상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보증제공회사	보증의 종류	보증금액	신고액	시인액	현실화 예상액
회생담보권 (미발생구 상채무)	서울보증보험(주)(*1)	전자상거래(결제 수단)보증보험	1,000,000	1,007,621	1,007,621	1,007,621
	(주)우리은행(*2)	지급보증	1,000,000	1,000,000	1,000,000	260,960
회생채권 (미발생구 상채무)	서울보증보험(주)(*3)	지급보증외 56 건	7,698,125	6,690,504	6,061,516	-
	토스페이먼츠(주)(*4)	PG 사(거래취소 및 환불)	1,772,056	1,772,056	1,772,056	
	(주)케이지이니스(*4)	PG 사(거래취소 및 환불)	225	225	225	
<b>합계</b>			<b>11,470,407</b>	<b>10,470,407</b>	<b>9,841,419</b>	<b>1,268,582</b>

(\*1) 티몬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쉬)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액 대지급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시인액 전액 현실화예상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채무자 회사는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법원허가를 통해 담보권자인 우리은행 측과 협의 후 환불진행 예정이며, 결제데이터 기준 집계된 환불대상 금액을 현실화예상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채무자 회사는 구상채권 시인액 외에, 추가적인 대지급 발생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현실화예상액은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 회사는 조사기준일 시점 현실화가능액을 판단하기에 불분명한 상황인 바 현실화가능액은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2) 진행 중인 소송현황

조사기준일 현재 채무자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없고,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No.	관할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소가	시인액	현실화 예상액	비 고
1	서울고법	2024 나 2042766	손해배상(기)	조형중	1,259	-	-	(*1)
2	서울중앙지법	2023 가단 5065965	손해배상(기)	강금숙 외 457 명	140,454	-	-	(*1)

No.	관할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소가	시인액	현실화 예상액	비 고
3	서울중앙지법	2023 가단 5093601	손해배상(기)	강경현 외 797 명	290,497	-	-	(*1)
4	서울중앙지법	2024 머 636862	정산금	에이치엔(주)	336,003	336,003	-	(*2)
5	서울중앙지법	2024 가단 5308676	기타(금전)	주식회사 모모프렌즈	433,214	428,423	4,791	(*3)
6	서울중앙지법	2024 머 615056	정산금	유한회사 서진	969,981	2,775,811	-	(*2)
7	서울중앙지법	2024 가단 5310877	정산금 반환 청구의 소	박우영	18,662	18,662	1	(*3)
8	서울중앙지법	2024 가단 5313128	판매대금	주식회사 이랜드리테 일	221,079	116,925	104,154	(*3)
9	서울중앙지법	2024 가단 5313203	판매대금청 구의 소	주식회사 이랜드글로 벌	120,592	117,079	3,513	(*3)
10	서울중앙지법	2024 가합 84873	정산금 청구의 소	주식회사 편한세상 외 1 명	940,709	897,504	43,205	(*3)
11	서울중앙지법	2024 가소 1724195	손해배상(기)	어수광	1,038	-	-	(*4)
12	서울중앙지법	2024 가합 85289	건물인도	주식회사 한조	765,603	-	-	(*4)
13	서울중앙지법	2024 가단 5322610	판매대금 정산금 청구	웅진식품 주식회사	332,423	342,482	-	(*2)
14	포천시법	2024 가소 2151	판매대금	피에스지 주식회사	16,423	16,160	263	(*3)
15	인천지법	2024 가소 535171	물품대금	주식회사 맥에듀	4,237	2,126	2,111	(*3)
16	인천지법	2024 가소 535461	물품대금	(주)케이맘	1,685	791	894	(*3)
17	서울중앙지법	2024 가단 5340656	정산금 청구의 소	주식회사 포레스트그 룹코리아	67,309	70,474	-	(*2)
18	서울중앙지법	2024 가소 1946209	물품대금 반환	하영범	690	690	-	(*2)

No.	관할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소가	시인액	현실화 예상액	비 고
19	서울중앙지법	2024 가단 5435158	정산금	주식회사 피엠제이인 터네셔널	146,555	224,573	-	(*2)
20	서울중앙지법	2024 가단 5434964	정산금	주식회사 피엠제이인 터네셔널	85,942			(*2)
21	서울남부지법	2024 가단 274231	정산금 청구의 소	주식회사 대단한 형제들, 주식회사 다원트레이 드	6,979	6,974	5	(*3)
22	서울중앙지법	2024 가단 5345255	물품대금	주식회사 세토리	44,838	38,807	6,032	(*3)
23	서울중앙지법	2024 가단 5346760	손해배상(기)	아시아골드 주식회사	460,229	460,229	-	(*2)
24	서울중앙지법	2024 머 616639	정산금 청구의 독촉사건	주식회사 엘케이몰	4,289,718	4,262,017	27,701	(*3)
25	광주지법	2024 가단 555085	물품대금	주식회사 아나이스	124,154	128,628	-	(*2)
26	서울중앙지법	2024 가단 5435868	광고대금	주식회사 디브릿지벤 처스	179,497	179,497	-	(*2)
27	서울중앙지법	2024 가단 5376686	매매대금	주식회사대 림코퍼레이 션	69,407	68,635	772	(*3)
28	서울중앙지법	2024 가단 5376945	사용료	금호리조트 주식회사	150,300	150,829	-	(*2)
29	수원지법	2024 가소 372223	정산금	김종원	1,350	1,350	-	(*2)
30	서울중앙지법	2024 가소 1884950	정산대금	주식회사 현대브러쉬 시스템	8,254	8,739	-	(*2)

No.	관할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소가	시인액	현실화 예상액	비 고
31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4 가소 38028	객실이용대 금	주식회사 빌더스개발 에이엠씨	5,190	5,190	-	(*2)
32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4 가소 87447	손해배상(기)	유민희	5,832	5,832	-	(*2)
33	서울중앙지법	2024 가합 99790	정산금	선민투어 주식회사	848,772	384,585	-	(*2)
34	부산지법	2024 가소 596975	정산금	더리본 주식회사	6,698	6,749	-	(*2)
35	서울중앙지법	2024 가단 5373649	임금	김혜란, 박지혜, 배은지	121,547		-	(*5)
36	서울중앙지법	2024 가소 2040708	임금	최나현	15,135		-	(*5)
37	서울중앙지법	2024 가소 1985334	임금	권보람	6,331		-	(*5)
38	서울북부지법	2024 가소 506676	임금	송상원	10,257		-	(*5)
39	서울동부지법	2024 가소 10971	임금	김성진	4,123		-	(*5)
40	서울동부지법	2024 가소 389578	임금	김주현	8,123		-	(*5)
41	서울중앙지방 법	2024 가소 2098196	임금	박미연	11,804		-	(*5)
42	서울남부지법	2024 가소 555101	임금	이예은	2,528		-	(*5)
43	의정부지방법 원 고양지원	2024 가소 98485	임금	류다연	3,991		-	(*5)
44	수원지법 오산시법원	2024 가소 251751	임금	배진리	8,640		-	(*5)
45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4 가소 242191	임금	정윤영	9,286		-	(*5)
46	서울남부지법	2024 가소 516045	임금	이지영	4,252		-	(*5)
47	서울남부지법	2024 가소 499942	임금	김대원	4,438		-	(*5)
48	서울동부지원	2024 가소 390899	임금	박지수	4,957		-	(*5)
49	수원지법 용인시법원	2024 차 850	임금	이선복	13,394		-	(*5)
50	인천지법	2024 가소 590253	임금	이지민	4,614		-	(*5)

No.	관할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소가	시인액	현실화 예상액	비 고
5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4 차전 13748	임금	김혜림	93,983		-	(*5)
52	서울남부지법	2024 가소 489617	임금	김지미	12,337		-	(*5)
<b>합계</b>					<b>11,435,314</b>	<b>11,055,764</b>	<b>193,442</b>	

(\*1) 머지사이드피해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건으로 채무자 회사는 과거 동일한 소송의 재판 결과를 비추어보았을 때 승소가능성 높은 바 현실화가능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 기시인함에 따라 현실화가능액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판매자 대금 정산금 청구 건으로 패소 예상에 따라 소가 중 회생채권 시인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화예상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채무자 회사는 지급해야 할 채무 없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현실화가능액은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 공익채권 분류 및 변제예정인 바 현실화가능액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7. 부채 차이내역(시부인표와 부채 조사액 차이내역)

조사기준일 현재 시부인표와 부채 조사액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채무자제시금액	비고
시부인표상 부채금액	868,421,195	(*1)
(+) 회생채권(상거래채권)(판매자)	2,329,158	(*2)
(+) 회생채권(상거래채권)(소비자)	3,517	(*2)
(+) 회생채권(구상채권)(PG 사)	78,930,658	(*3)
(+)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1,772,282	(*3)
(+)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60,928,867	(*4)
(+) 공익채권(미지급급여)	65,676	(*5)
(+) 공익채권(미지급퇴직금)	1,678,152	(*6)
(+) 공익채권(대지급금)	1,272,008	(*7)
(+) 공익채권(퇴직급여충당부채)	3,505,414	(*8)
(+) 우발채무(소송 현실화예상액)	193,442	(*9)
<b>재산상태 조사액 (부채 조사액)</b>	<b>1,019,100,368</b>	

(\*1) 조세 등 채권 1,016,991 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판매자 및 소비자에 대한 상거래채권으로 부인했던 채권액에 대해 증빙자료 확인됨에 따라 이의철회예정인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케이지이니스 등 PG 사 구상채권으로 부인했던 채권액에 대해 증빙자료 확인됨에 따라 이의철회예정인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판매자 정산대금, IT 플랫폼 서비스 사용료, 특수관계자에 대한 전환사채 상환대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채권으로 시부인 과정에서 일응부인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관련 계약서, 판매데이터, 정산내역서 등의 증빙확인 및 담당자 인터뷰에 따라 채권 존재 확인되었으며, 이에 실사조정 반영하였습니다.

(\*5) 직원 미지급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퇴사한 직원의 미지급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채무자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고 있으며,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 채무자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패소가능성이 높아 현실화가 예상되는 12건의 소에 대한 소송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토 항목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가. 법규정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을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을 후 또는 그 전 60 일 이내에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을 후 또는 그 이전 6 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제 2 항 제 1 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제 140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본 조의 해당여부

본 조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유출 행위

채무자 회사는 큐텐그룹에 인수된 시점 이후 특수관계자 간 빈번한 자금거래를 진행해왔습니다. 큐텐그룹 인수 시점 이후 주요한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큐텐그룹 인수 후 특수관계자 순유출금액]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명	2023 년	2024 년	합 계
Qoo10 Pte.Ltd.	16,800,000	7,800,000	24,600,000
(주)티몬글로벌	106,149,558	3,078,000	109,227,558
(주)티몬위드유	320,000	180,000	500,000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	2,000,000	-	2,000,000
(주)위메프	5,000,000	(8,200,000)	(3,200,000)
(주)인터파크커머스	-	1,800,000	1,800,000
합 계	130,269,558	4,658,000	134,927,558

상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유출은 유동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회수가 불투명한 자금대여 행위였던 점과 실질적으로 판매자에게 정산대금 지급 등 채권자에게 변제를 했어야 할 재원이므로 동 자금유출 행위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100 조 1 항 고의부인 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인권 대상 여부는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 회사들이 현재 청산, 회생절차를 진행 중으로 환가처분할 실질적인 보유 자산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부인권 행사의 실익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전환사채 일부 원금 조기상환

채무자 회사는 2017 년 4 월 24 일 시몬느글로벌벤처전문사모투자신탁제 1 호(‘본건 투자신탁’)의 집합 투자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신탁업자로서 수탁은행인 농협은행 및 집합투자기구인 시몬느자산 운용을 인수인으로 하여 500 억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최초 계약서 상 만기일은 2024 년 4 월 24 일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최초 만기일인 2024 년 4 월 24 일에 인수인과 2025 년 4 월 24 일로 1 년 만기연장합의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조기상환의무 등의 조건변경 내용을 추가한 전환사채 조건변경 합의를 2024 년 5 월 31 일 체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전환사채변경합의서 상 조기상환의무 중 1 차수에 해당하는 원금 20 억원을 2024 년 5 월 31 일 인수인에게 상환하였으며, 2 차수 금액 30 억원은 현재까지 미상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차수 20 억원의 원금 조기상환 행위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을 후 또는 그 전 60 일 이내에 이루어진 채무의 소멸에 해당하므로 부인권 대상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환사채 변경 합의서 제 2 조 2.3. 일부 조기상환의무 내역]

차수	일부 조기상환기일	일부 조기상환원금
1 차	2024 년 5 월 31 일	금 이십억(2,000,000,000)원
2 차	2024 년 7 월 31 일	금 삼십억(3,000,000,000)원

### 3) 미사용 사무용 자산 매각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기존에 임차하던 제이케이타워 임차계약 해지로 건물 원상복구 공사 후 보증금 잔액 반환을 위해 사용계획이 없는 사무용자산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어반스페이스코리아에 2024 년 10 월 25 일 매각하였습니다. 관련 상세 자산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품목	수량	매각단가	금액
사무용가구	책상	294	10	2,940
	의자	294	20	5,880
	캐비닛(3 단)	4	7	28
회의용가구	책상	7	7	49
	의자	67	2	134
<b>합계</b>		<b>666</b>		<b>9,031</b>

채무자 회사가 매각한 사무용 자산의 수량은 총 666 개로 일괄매각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자산 건별 시세조회를 통한 매각금액 적정성 검토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판단되며, 일괄매각에 대한 시세 조회 또한 매입업체로부터 자산실사를 통한 견적 확인이 가능한 바 본 매각 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 확인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사가 미사용 건물에 대한 추가적인 임차료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계약 해지를 해야 했으며, 임차계약 해지를 위해서 자산 매각 후 원상복구를 지체없이 진행하기 위해 단 기간 내 대규모의 자산을 급매해야 했던 점과 급매하지 않을 경우 이사비용 및 보관료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적절한 매각금액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급처분을 고려한 조사위원이 산정한 매각대상 자산의 가치인 5,645 천원을 상회하는 금액에 매각함에 따라 매각대금 9,031 천원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자산 매각 행위는 부인권 대상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 가. 법규정

제 1 항 제 100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은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 2 항 제 100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 본문에 규정된 60 일을 1 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 3 항 제 100 조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 월을 1 년으로 한다.

#### 나. 본 조의 해당여부

위 사항에 대하여 발견된 바 없습니다.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2조 (어음채무지급의 예외)

#### 가. 법규정

제 1 항 제 100 조 제 1 항의 규정은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1 인 또는 여러 명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항 제 1 항의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관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나. 본 조의 해당여부

위 사항에 대하여 발견된 바 없습니다.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3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 가. 법규정

제 1 항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을 후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을 제 3 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을 날부터 15 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지급정지 등이 있기 전에 가등기 또는 가등락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락을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항 제 1 항의 규정은 권리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 나. 본 조의 해당여부

위 사항에 대하여 발견된 바 없습니다.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

##### 가. 법규정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을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 나. 본 조의 해당여부

위 사항에 대하여 발견된 바 없습니다.

####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4항 (무상소각 사유의 해당여부)

##### 가. 법규정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거나 3 주 이상을 1 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 나. 본 조의 해당여부

법인 채무자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큐텐그룹에 인수된 시점 이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약 1,349 억원의 자금 순유출을 발생시켰으며,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금유출 사유는 지배주주 티몬글로벌의 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대여 1,000 억

과 큐텐그룹 최상위지배기업 Qoo10 Pte.Ltd.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목적에 해당합니다. 큐텐그룹 최상위지배기업 Qoo10 Pte.Ltd.의 대표이사 구영배는 동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 류광진은 주로 구두승인을 통해 자금거래 승인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 자금대여 행위는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재산 은닉 또는 유용 등으로 인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으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채무자 회사의 유동성을 급격히 악화시켰으며, 이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유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 제146조 제3항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가. 법규정**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나. 본 조의 해당여부**

회사는 조사기준일 현재 자본 잠식상태로 조사되어, 회사의 주주·지분권자는 법 제 146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상태조사액**

(단위: 천원)

계정과목	채무자제시금액	실사조정	재산상태조사액
유동자산	95,776,728	(66,844,838)	28,931,889
비유동자산	14,418,860	26,902,526	41,321,386
<b>자산총계</b>	<b>110,195,587</b>	<b>(39,942,312)</b>	<b>70,253,275</b>
<b>부채총계</b>	<b>868,421,195</b>	<b>150,679,174</b>	<b>1,019,100,368</b>
<b>자본총계</b>	<b>(758,225,607)</b>	<b>(190,621,486)</b>	<b>(948,847,093)</b>

**9.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산정**

청산가치는 도산한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에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기업의 모든 개별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예상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사위원이 채무자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 채무자가 제시한 재무상태표의 자산가액을 실물조사, 현재가치할인, 부실자산의 차감, 고정자산의 시가 등을 통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재산상태조사액	청산조정	청산가치
<b>1. 유동자산</b>	<b>28,931,889</b>	<b>(18,301,703)</b>	<b>10,630,186</b>
현금및현금성자산	6,896,120	-	6,896,120
단기금융상품	1,353,000	-	1,353,000
매출채권	3,135,895	(940,769)	2,195,127
미수금	9,274,700	(9,259,063)	15,637
단기대여금	7,049,318	(7,049,318)	-
미수이자	1,017,518	(968,294)	49,224
선급금	50,000	-	50,000
기타유동자산	155,337	(84,259)	71,078
<b>2. 비유동자산</b>	<b>41,321,386</b>	<b>(38,332,912)</b>	<b>2,988,474</b>
장기금융상품	1,000,000	-	1,000,000
장기대여금	35,000,000	(35,000,000)	-
미수수익	374,909	(374,909)	-
유형자산	3,851,366	(2,601,785)	1,249,581
무형자산	79,612	(79,612)	-
기타비유동자산	1,015,500	(276,607)	738,893
<b>자산총계</b>	<b>70,253,275</b>	<b>(56,634,615)</b>	<b>13,618,660</b>

## 10. 채무자의 사업의 수익성 분석 및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 산정

### (1) 계속기업가치 산정요약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준비연도(2024년 9월 10일 ~ 2024년 12월 31일)와 채무자의 향후 10년간(2025년~2034년) 미래수익흐름과 성장모형을 이용한 회생기간 이후의 현금흐름 추정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인율은 회생절차 개시일인 2024년 9월 10일 현재 3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 2.877%에 위험프리미엄 6.5%를 적용한 9.377%를 적용하였으며, 회생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에 대한 고정성장률은 0.0%를 가정하였습니다. 위험프리미엄은 회사의 특성(회생)을 고려하여 위험 프리미엄 최대치인 6.5%로 가정하였습니다.

상기 절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하였는 바,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 (A)	(81,060,710)
추정기간 이후의 현재가치 (B)	(12,508,876)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 (C)	1,050,000
<b>계속기업의 가치(D=A+B+C)</b>	<b>(92,519,586)</b>

(2) 추정손익계산서

준비연도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채무자의 추정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준비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I.매출액 (매출액성장율)	-	52,184,667 (-84.4%)	64,991,839 24.5%	79,236,135 21.9%	99,014,761 25.0%	110,749,227 11.9%
II.매출원가 (매출원가율)	-	-	-	-	-	-
III.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율)	-	52,184,667 100.0%	64,991,839 100.0%	79,236,135 100.0%	99,014,761 100.0%	110,749,227 100.0%
IV.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율)	9,404,482	72,182,687 138.3%	82,333,227 126.7%	93,620,546 118.2%	109,243,868 110.3%	118,906,106 107.4%
V.영업이익(손실) (영업이익율)	(9,404,482)	(19,998,020) (-38.3%)	(17,341,388) (-26.7%)	(14,384,411) (-18.2%)	(10,229,106) (-10.3%)	(8,156,879) (-7.4%)

구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합계
I.매출액 (매출액성장율)	122,500,006 10.6%	145,706,742 18.9%	148,038,367 1.6%	150,406,719 1.6%	152,812,369 1.6%	1,125,640,831
II.매출원가 (매출원가율)	-	-	-	-	-	-
III.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율)	122,500,006 100.0%	145,706,742 100.0%	148,038,367 100.0%	150,406,719 100.0%	152,812,369 100.0%	1,125,640,831
IV.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율)	128,725,070 105.1%	147,856,367 101.5%	150,466,812 101.6%	153,183,839 101.8%	155,769,441 101.9%	1,221,692,446
V.영업이익(손실) (영업이익율)	(6,225,064) (-5.1%)	(2,149,625) (-1.5%)	(2,428,445) (-1.6%)	(2,777,120) (-1.8%)	(2,957,072) (-1.9%)	(96,051,615)

**(3) 추정 순영업현금흐름**

채무자의 향후 순영업현금흐름은 준비연도(2024년 9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와 회생기간인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10년간 추정된 손익을 바탕으로 2034년까지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준비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세전영업이익	(9,404,482)	(19,998,020)	(17,341,388)	(14,384,411)	(10,229,106)	(8,156,879)
(-)법인세비용	-	-	-	-	-	-
(-)CAPEX	-	-	-	-	-	(15,356)
(+)감가상각비	559,358	1,621,504	1,242,633	749,296	211,555	41,806
(+)순운전자본의 증감	-	(5,631,752)	(1,382,146)	(1,537,240)	(2,134,503)	(1,266,380)
<b>영업현금흐름액</b>	<b>(8,845,124)</b>	<b>(24,008,268)</b>	<b>(17,480,901)</b>	<b>(15,172,355)</b>	<b>(12,152,054)</b>	<b>(9,396,809)</b>

구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합계
세전영업이익	(6,225,064)	(2,149,625)	(2,428,445)	(2,777,120)	(2,957,072)	(96,051,615)
(-)법인세비용	-	-	-	-	-	-
(-)CAPEX	(211,585)	(702,699)	(1,745,265)	(399,017)	(608,910)	(3,682,832)
(+)감가상각비	17,982	88,415	293,250	560,207	650,296	6,036,301
(+)순운전자본의 증감	(1,268,140)	(2,504,463)	(251,628)	(255,592)	(259,617)	(16,491,461)
<b>영업현금흐름액</b>	<b>(7,686,808)</b>	<b>(5,268,373)</b>	<b>(4,132,089)</b>	<b>(2,871,522)</b>	<b>(3,175,303)</b>	<b>(110,189,607)</b>

## 11. 채무변제계획(안)

### (1) 변제대상 채무내역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4년 9월 10일 현재 채무자의 채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재산상태조사액
<b>1. 회생담보권</b>	<b>2,178,694</b>
상거래채권(판매자)	171,072
미발생구상채권	2,007,621
<b>2. 회생채권</b>	<b>1,009,189,992</b>
대여금채권	68,538,163
상거래채권(판매자)	595,517,598
상거래채권(소비자)	1,247,267
상거래채권(양수금)	146,072,874
상거래채권(일반)	49,717,315
구상채권(PG 사)	79,184,111
구상채권(일반)	150,000
미발생구상채권	7,833,797
특수관계인채권	60,928,867
<b>3. 조세 등 채권</b>	<b>1,016,991</b>
<b>4. 공익채권</b>	<b>6,521,250</b>
미지급급여	65,676
미지급퇴직금	1,678,152
대지급금	1,272,008
퇴직급여충당부채	3,505,414
<b>5. 미확정채권 현실화예상액</b>	<b>193,442</b>
소송 현실화예상액	193,442
<b>부채총계</b>	<b>1,019,100,368</b>

### (2) 채무변제계획(안) 요약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청산하는 것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 보다 경제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채무변제계획(안)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 추정 자금수지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청산하는 것이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추정자금수지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 청산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에 대한 배당률**

채무자가 청산된다는 가정 하에 공익채권 및 회생채권 등의 배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채 권 구 분		변제대상 금액	배당액(*1)	배당률
상거래채권(판매자)(회생담보권)	코카콜라음료	171,072	171,072	100.00%
미발생구상채권(회생담보권)	서울보증보험	1,007,621	미정	미정
	우리은행	1,000,000	미정	미정
<b>회생담보권 소계(*2)</b>		<b>2,178,694</b>	<b>171,072</b>	<b>100.00%</b>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68,538,163	298,938	0.44%
	상거래채권	792,555,054	3,456,835	0.44%
	구상채권	79,334,111	346,026	0.44%
	미발생구상채권	7,833,797	미정	미정
	특수관계인채권	60,928,867	265,749	0.44%
<b>회생채권 소계(*1)</b>		<b>1,009,189,992</b>	<b>4,367,549</b>	<b>0.44%</b>
<b>조세 등 채권</b>		<b>1,016,991</b>	<b>1,016,991</b>	<b>100.00%</b>
공익채권	미지급급여	65,676	65,676	100.00%
	미지급퇴직금	1,678,152	1,678,152	100.00%
	대지급금	1,272,008	1,272,008	1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3,505,414	3,505,414	100.00%
<b>공익채권 소계</b>		<b>6,521,250</b>	<b>6,521,250</b>	<b>100.00%</b>
미확정채권 현실화예상액	회생담보권(미발생구상채권)	1,268,582	1,268,582	100.00%
	소송 현실화예상액	193,442	844	0.44%
<b>미확정채권 현실화예상액 소계</b>		<b>1,462,024</b>	<b>1,269,425</b>	<b>86.83%</b>
<b>합 계(*1)</b>		<b>1,019,100,368</b>	<b>13,346,287</b>	<b>1.32%</b>

(\*1) 청산가치 13,618,660 천원과 배당액 13,346,287 천원의 차이는 일반배당에 대한 청산비용(2%)에 기인합니다.

(\*2) 소계 및 합계의 배당률 산정시 미발생구상채권을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3) 미확정채권 현실화예상액 대상 채권액 중 회생담보권(미발생구상채권) 1,268,582 천원은 회생담보권(미발생구상채권) 2,007,621 천원에 기반영되어 있음에 따라 합계 산정시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각 채권자별 청산배당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채권액	담보자산 배당	일반배당	총배당액(*1)	공제후 잔액	배당률
	1)	2)	3)	4) = 2) + 3)		5)=4)/1)
1. 청산가치		2,360,621	11,258,039	13,618,660		
2. 청산관리비용		47,212	225,161	272,373	13,346,287	
<b>공익채권</b>						
미지급급여	65,676	-	65,676	65,676		100.00%
미지급퇴직금	1,678,152	-	1,678,152	1,678,152		100.00%
대지급금	1,272,008	-	1,272,008	1,272,008		1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3,505,414	-	3,505,414	3,505,414		100.00%
<b>공익채권 소계</b>	<b>6,521,250</b>	<b>-</b>	<b>6,521,250</b>	<b>6,521,250</b>	<b>6,825,037</b>	<b>100.00%</b>
<b>회생담보권</b>						
상거래채권(판매자)	171,072	171,072	-	171,072		100.00%
코카콜라음료	171,072	171,072	-	171,072		100.00%
<b>미발생구상채권</b>	<b>2,007,621</b>	<b>미정</b>	<b>미정</b>	<b>미정</b>		<b>미정</b>
서울보증보험	1,007,621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우리은행	1,000,0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b>회생담보권 소계(*2)</b>	<b>2,178,694</b>	<b>171,072</b>	<b>-</b>	<b>171,072</b>	<b>6,653,965</b>	<b>100.00%</b>
<b>회생채권</b>						
대여금채권	68,538,163	-	298,938	298,938		0.44%
상거래채권	792,555,054	-	3,456,835	3,456,835		0.44%
구상채권	79,334,111	-	346,026	346,026		0.44%
미발생구상채권	7,833,797	미정	미정	미정		미정
특수관계인채권	60,928,867	-	265,749	265,749		0.44%
<b>회생채권 소계(*2)</b>	<b>1,009,189,992</b>	<b>-</b>	<b>4,367,549</b>	<b>4,367,549</b>	<b>2,286,416</b>	<b>0.44%</b>
<b>조세 등 채권</b>	<b>1,016,991</b>	<b>873,755</b>	<b>143,236</b>	<b>1,016,991</b>	<b>1,269,425</b>	<b>100.00%</b>
<b>미확정채권 현실화예상액</b>						
회생담보권(미발생구상채권)	1,268,582	1,268,582	-	1,268,582		100.00%
소송 현실화예상액	193,442	-	844	844		0.44%
<b>미확정채권 현실화예상액 소계</b>	<b>1,462,024</b>	<b>1,268,582</b>	<b>844</b>	<b>1,269,425</b>	<b>-</b>	<b>86.83%</b>
<b>합계(*2,3)</b>	<b>1,019,100,368</b>	<b>2,313,409</b>	<b>11,032,878</b>	<b>13,346,287</b>		<b>1.32%</b>

(\*1) 청산가치 13,618,660 천원과 배당액 13,346,287 천원의 차이는 일반배당에 대한 청산비용(2%)에 기인합니다.

(\*2) 소계 및 합계의 배당률 산정시 미발생구상채권을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3) 미확정채권 현실화예상액 대상 채권액 중 회생담보권(미발생구상채권) 1,268,582 천원은 회생담보권(미발생구상채권)

2,007,621 천원에 기반영되어 있음에 따라 합계 산정시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5) 계속기업시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율**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청산하는 것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 보다 경제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변제율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6) 변제율과 배당률의 비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청산하는 것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 보다 경제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변제율과 배당률 비교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12. 회생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조사위원의 의견

전술한 조사결과를 종합한 회생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조사위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기준일 현재의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수정 후 자산총계는 70,253,275 천원이고 부채총계는 1,019,100,368 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영업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회생절차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가능성이 없습니다.

조사기준일 현재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한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92,519,586 천원이고 청산가치는 13,618,660 천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106,138,246 천원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청산하는 것이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채무자는 인가전 M&A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M&A 추진 및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 결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위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외부자료와 채무자의 결산자료로부터 산출한 과거의 실제 경험치를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한편, 객관적인 추정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본 조사위원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추정에 근거하되 그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사용한 가정들은 그 가정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된 기업가치의 평가 결과는 실제와 달라질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